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최 은 하 의원)

의 안 번 호	25-141
------------	--------

발의년월일: 2025. . .

발의자: 최은하, 강동오, 고병준, 김승수,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오옥자,
이상원, 이한동, 장영준, 장정희,
차해영, 채우진, 홍지광

1. 제정 이유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닌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돋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음. 이에 마포구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출입시 대응에 관한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증진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마포를 만들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안 제1조)
- 나.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안 제2조)
- 다. 보조견의 출입보장과 홍보활동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라.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홍보 및 교육 추진 (안 제4조)
- 마.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3. 관계법령

- 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40조의2
-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3조의2
-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4. 조례안 : 불임

5.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

6.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2025. 11. 7. ~ 11. 12.
- 나. 의견제출: 없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꽈토그램(pictogram)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점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
견 출입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기관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
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
우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장애인복지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타법개정]

제40조(장애인 보조견의 훈련·보급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훈련·보급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③ 누구든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점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1. 26., 2024. 10. 22.>

(생략)

제40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0. 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11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3조의2(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홍보사업의 내용 등)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홍보영상 및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2.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 ③ 제1항에 따른 홍보사업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사업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8.]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0. 23.] [보건복지부령 제1131호, 2025. 10. 23., 일부개정]

제29조(장애인 보조견표지 발급대상)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이하 “보조견표지”라 한다)의 발급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보조견 전문훈련기관(이하 “전문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으로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제30조(보조견표지 발급 등) ① 제29조에 따른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해당 훈련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하여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훈련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장애인 보조견의 전신사진 1장

2. 장애인 보조견이 훈련 중이거나 훈련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견표지의 발급을 신청받으면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 2에 따른 보조견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④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잃어버리거나 그 표지가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1. 재발급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보조견표지(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⑤ 전문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견이 사망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으로서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인 보조견에 사용 중인 보조견표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조견표지 발급현황을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제4조(사업) 구청장은 보조견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2. ‘보조견 출입가능’ 픽토그램(pictogram) 보급
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점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및 대응에 관한 교육
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 생략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동행국 장애인복지과 신아름
연락처	02-3153-8879